

청년내일채움 공제 가입현황과 개선안

2018년 6월 17일

보증과 공제
글로벌연금보험대학원
학번 : 2018720282
박은나

목 차

I. 개요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II. 청년 내일 채용 공제

1.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정의와 사업 목적
2.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가입 현황
3. 문제점

III.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성장을 위한 개선 방향

1. 개정 내용 2018.04.01
2. 개선 방향

IV.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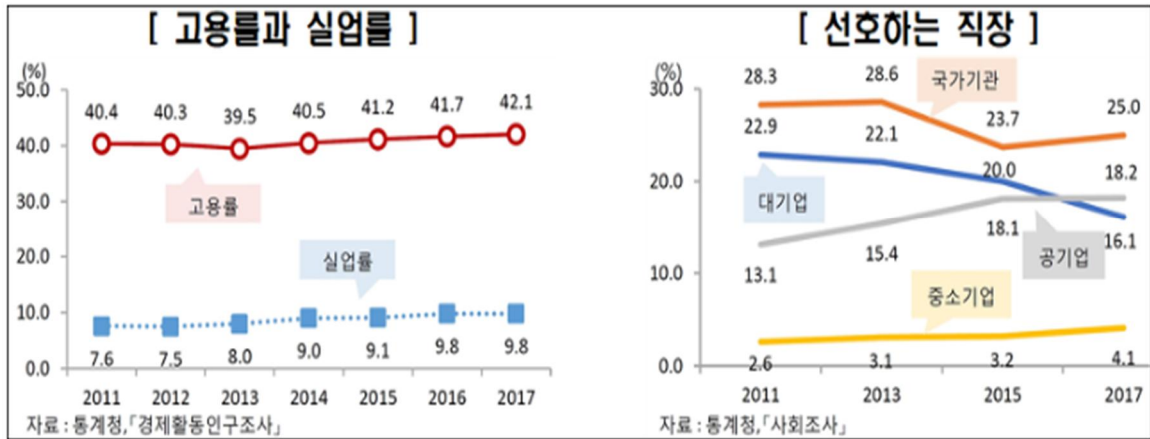
I. 개요

1. 연구의 배경

한국 경제의 침체기와 고용 경직적인 노동시장으로 인해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나 나라의 경제 성장 중심축에 있는 청년 실업률 증가는 국가 경쟁력 하락의 요인이 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규모는 3개월(2018년 2월~4월)연속 10만 명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실업자는 2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대졸 청년 실업률의 지속적 상승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청년 실업률 상승 요인으로는 첫째, 세계경제 위기로 저성장, 부채로 이어지는 악순환 반복으로 기업의 고용률 하락이 청년 실업률 상승의 원인이다. 둘째, 대한민국 전체 학력수준이 상승하여 졸업 후 국가기관, 공기업, 대기업을 선호하는 반면 이들의 좁은 고용 시장으로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중소기업의 취업 기피 현상으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복지등의 사유로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잦은 이직으로 고용 불안이 청년실업률 증가에 원인이 되고 있다.

<표1> 2018년 고용률과 실업률 · 선호하는 직장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정부의 청년실업률 억제 정책 중 하나로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를 이끌 중소 핵심인재 양성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6년 시행된 공제 사업이다.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 원(+이자)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 연구의 목적

2016년 7월 1일 출범한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2018년 4월 1일 제도의 개정 변경을 시행 공시하였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한시적인 아닌 중장기적 고용 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한 공제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해당 공제 사업이 청년 실업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지원사업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가입 사업장에서도 청년내일채움 공제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고용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정부의 지원 사업을 악용하여 청년 취업자에게 부당한 임금 기준을 적용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제 가입자 대상 기업에 대해 행정적 규제와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해당 공제 사업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안정화 모색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현황 등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2018년 4월 1일 변경된 공제 규정과 변경 전 공제 규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제 가입 대상 기업 및 청년 취업자가 공제 가입을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해당 공제의 안정과 사업 확대를 위해 개선 방향을 살펴 보고자 한다.

II. 청년내일채움 공제의 정의와 목적

1. 정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1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2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 만 원(+이자)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되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 본인이 2년간 300 만원 (매월 12 만 5000 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 만 원)와 기업(400 만 원, 정부지원)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한 뒤,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 만 원과 이자를 만기공제금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만 15 세 이상 34 세 이하의 청년으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으로,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 세로 한정한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 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이다.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 인 이상~5 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다. 기업에는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00 만 원이 지원되며, 이 중 400 만 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된다.

2. 목적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 취업 지원 사업으로, 미 취업 청년의 중소기업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추가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경차 완화에 기여하고,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채용과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성 공제상품인 내일채움공제에서 파생되었으며, 중소기업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자산형성 지원 및 인력양성의 동일한 목적이 있으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청년의 중소기업의 유입 촉진하고자 신설된 공제로 정부의 보조금 지원 방식에 있어 차이점이 있다.

<표1> 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 비교

구분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일자	2014년8월	2017년1월
목 적	중소기업근로자 장기 재직 자산형성 지원 및 인력양성	미취업청년의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 중소기업청년의 장기 재직 중소기업청년의 자산형성지원

¹ 고용보험피보험자수 5인이상 중소, 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² 만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39세로 한정

관련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8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8 『고용 정책 기본법』 제25 조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 7조												
가입자 혜택	중소기업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 (비용) 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적용 ³ 채용유지지원금 수령 [2년형]300만원 [3년형]150만원												
	핵심인력	5년 만기재직 후 본인의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수령 [2년형] 300만원납입, 1600만원+이자 [3년형]600만원납입, 3000만원+이자												
자격조건	기업	종업원 1인 이상의 기업(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도 중소기업에 포함(단, 제외업종4 있음) 고용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등 일부업종 제외)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입 가능												
	근로자	중소기업 소속 상시근로자 중 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핵심인력(학력, 경력, 자격 무관) 5년 이상 장기재직이 가능한 근로자(만기 시 재직여부 확인) 만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39세로 한정												
납입기간	5년(최초 가입시), 3~5년(재가입시 선택 가능)	2년 3년(2018.04.01 추가 도입)												
공제금 납입금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각각 5년간 2,000만원 이상(매월 34만원 이상) 공동 적립 ⁵	청년, 사업주, 정부가 공동 적립 (단위: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류</th> <th>청년</th> <th>사업주</th> <th>정부</th> </tr> </thead> <tbody> <tr> <td>2년</td> <td>300</td> <td>400</td> <td>900</td> </tr> <tr> <td>3년</td> <td>430</td> <td>720</td> <td>10,80</td> </tr> </tbody> </table>	종류	청년	사업주	정부	2년	300	400	900	3년	430	720	10,80
종류	청년	사업주	정부											
2년	300	400	900											
3년	430	720	10,80											
중도 해약	근로자 납입금 수령	근로자 납입금 수령 정부 지원금 기간 적립금 일부 지급												
만기공제금	(34만원*60개월) * 연복리이자(연단위 변동금리)	[2년형]1,600만원 +·a [3년형]3,000만원 +a												

³ 세액공제적용 범위 : 당해연도 발생액의 25% 또는 직전년도 대비 증가액의 50% 中 선택 적용

⁴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부동산업, 주점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및 기타 주점업),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휴·폐업 기업, 세금(국세) 체납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ex.비영리기업)

⁵ 공동적립비율: 「핵심인력 : 기업주 = 1 : 2이상」의 비율로 납부(ex: 핵심인력 10만원 : 중소기업사업주 25만원)

3. 가입 현황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18년 4월 5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등에 장기근속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18년 3월말 현재 총 66,734명의 청년이 가입하였다.

가. 연도별 가입 현황

연도별로는 '18년 (7~12월)에는 2,788개 기업에서 5,217명의 청년이, '17년에는 18,268개 기업에서 40,170명의 청년이, '18년에는 3개월간 10,514개 기업에서 21,347명의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였다. 중소기업벤처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은 360만1,004개(2015년 기준)다. 이중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은 18,268개(2017년 12월 31일 기준)이다.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 중 0.5%가 가입하였고, 가입한 근로자수는 2만6813명(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 중 1.8%가 청년내일공제에 가입하였다.

<표2> 연도별 청년내일공제 가입현황

(단위 : 명, 개소)

사업연도	가입 청년 수	가입 기업 수
'16년 (시범, 7~12월)	5,217명	2,788개소
'17년 (1~12월)	40,170명	18,268개소
'18년 (1~3월)	21,347명	10,514개소
총계(누적)	66,734명	26,020개소

* 기업 누계는 연도별 일부중복 있음. * 성별로는 남성이 62.3%, 여성이 37.7%를 차지.

<표3> 연도별 중소기업사업체 수 및 종사자 추이⁶

(단위 : 개, 명, %)

사업연도	전체(A)		중소기업(B)		중소기업비중(B/A)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2015	3,604,773	16,774,948	3,601,276	14,628,135	99.9	87.2
2014	3,545,473	15,962,745	3,542,350	14,027,636	99.9	87.9

나. 기업규모별 가입현황

구체적으로, 가입기업들은 주로 30인 이하, 제조업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가입기업의 약 70%가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며, 100명이상 중소기업 사업장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을 볼 수 있다.

⁶ 2017년 통계청, 2015년 기준 경제 총조사에서 재편, 가공_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참조

<표3> 가입기업 규모별 분류

(단위: 개소, %)

구분	계	5인 미만	10인 미만	10~29인	30~99인	100인 이상
개소 (비율)	26,020 (100)	2,055 (7.9)	6,332 (24.3)	9,972 (38.3)	5,712 (22.0)	1,949 (7.5)

다. 업종별 가입현황

업종별로는 제조업(42.6%), 도소매업(15.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2.9%) 순이었다.

<표4> 가입기업 업종별 분류

(단위: 개소, %)

구분	계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도소매업	출판, 영상, 통신, 정보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타
개소 (비율)	26,020 (100)	11,092 (42.6)	1,705 (6.6)	3,955 (15.2)	3,196 (12.3)	3,344 (12.9)	2,728 (10.5)

라. 연령별 가입현황

연령별로는 20대 77.2%, 30대 18.4% 순이었고,

<표5> 가입청년 연령별 분류

(단위: 명, %)

구분	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세이상
인원 (비율)	66,734 (100%)	3,149 (4.7%)	18,643 (27.9%)	32,447 (48.6%)	10,819 (16.2%)	1,676 (2.5%)

마. 학력별 가입현황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이 74.7%, 고졸은 25.3%를 차지했다.

<표6> 가입청년 학력별 분류

(단위: 명, %)

구분	계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인원 (비율)	66,734 (100%)	16,874 (25.3%)	11,066 (16.6%)	38,794 (58.1%)

3. 문제점

청년 실업률 억제와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대상이 되는 청년의 취업 및 안정, 그리고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는 공제 상품이다. 그러나 공제 제도 시행 후 '17년 공제가입률은 중소기업의 0.5%로 참여율이 높지 않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상품의 가입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 모니터링을 한 결과로 ①청년이 정규직 입사 후 1개월 이내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 취소 기간 1개월의 한 정성 ②청년이 귀책 사유 없이 중도 퇴직시 재가입 불가 조항 ③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위해 중소기업의 퇴사로 중소기업의 인재 유출등의 문제점을 인식하였다. 이에 공제 제도 시행 후 2018년 3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문제점을 재 점검하여2018년 4월1일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III.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성장을 위한 개선 방향

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기한의 한정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시기는 중소기업 정규직 입사일로 1개월 이내로 가입 시기가 한정되다. 그러나 청년이 한 기업에 입사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곳인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부여 기간이 필요하며, 신입사원이 입사하여 1개월내에 공제가입 한 정기간을 고려할 여유가 없는 문제점이 있다.

[개선안] 청년 공제 가입 및 취소 기한 연장

(현행) 정규직 채용일 전후 30 영업일 이내 → (개정) 정규직 채용일전 후 3개월 이내 공제 가입 및 취소 결정, 취소시 재가입의 기회 부여 (시행일) '18.3.15. 이후 정규직 채용자부터 적용

나. 청년이 중소기업 퇴직 후 이직시 공제 혜택 종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공제 가입 기간 중 중도해지(퇴사) 시 퇴직 사유에 관계없이 이직 후 재가입이 불가하다. 청년이 기업을 퇴사하고 이직을 하는 사유는 다양할 수 있으나, 청년의 퇴직 의사와 상관 없이 사업장 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을 이유로 퇴직 및 이직을 하는 경우에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개선안] 비자발적 중도 해지시 1회한 재가입 허용

청년의 비자발적 중도해지(사업장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시에는 1 회 재가입을 허용, 단, 퇴사 후 6 개월이내 재 취업시 가능하며, 재가입시에는 해지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은 청년공제 신청기간 이내 전액을 고용센터에 납부(미납시 가입불가)
 (시행일) '18.4.1. 이후 사업주 귀책사유(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퇴사자부터 적용

다. 신규가입자가 아닌 자가 이직 시 청년공제 가입 불허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대상은 직장 경험 여부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무관하게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가입을 허용하였다. 그 결과, 공제가입을 위해 중도 퇴사로 중소기업의 예상치 못한 인력 유출 사례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개선안] 공제 가입을 위한 중도 퇴사자에 대한 가입 제한 규정 도입
'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이후 청년공제 가입 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 개월 이하인 자'인 신규취업자 (시행일) '18.4.1. 이후 정규직 채용자부터 적용, 신규취업자가 아닌 자가 이직시 청년공제 가입 불허 (현행) 이직 무관 (개정)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 개월 이상인 자에 한해 가입 허용 ※ 단, 장기 고용보험가입자 중 (4.1 이후 퇴사자)직전 사업장에서 폐업·도산으로 퇴사한 경우에 한해 6 개월 실직기간을 미적용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44 조 제 2 항의 관련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직기간이 적용된다. /장기 고용보험가입자중 3.31 까지 퇴사자는 공제 가입일(취업일)전 실직기간에 관계없이 가입가능 (시행일) '18.4.1. 이후 퇴사자부터 적용

<표7>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개선 사항

항 목	종 전	개 선 (4.1.시행)
가 입 기 한	정규직 취업일 30영업일 이내	정규직 취업일 3개월 이내 (3.15 이후 정규직 취업자부터 적용)
가입취소기한	가입 후 1개월 이내	가입 후 3개월 이내 (3.15 이후 정규직 취업자부터 적용)
중도해지 시 재가입 여부	중도해지 시 재가입 불가	비자발적 중도해지 시 재가입 1회 부여 (4.1이후 비자발적 중도해지자부터 적용)
청년가입요건	생애최초 취업자 이직자(청년공제가입이력 無)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이내 신규 취업자 및 실직기간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VI. 결론

청년내일공제사업의 효과성에 관해서는 여전히 많은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청년일자리 특성의 장기 효과와 청년고용대책에 관한 시사점'을 통해 청년들의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에 취직을 유도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은 비현실적인 공제 정책이라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첫 일자리 임금이 향후 노동 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나타나는지 연구기관⁷의 실증분석 결과, 고졸자의 경우 관측된 첫 일자리 특성 중 임금 외의 변수들은 장기적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대졸자의 경우에는 초임뿐만 아니라 경력 초기 기업규모와 고용형태 등 첫 일자리의 조건이 향후 대졸 노동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의 경우 중소기업을 경력개발 경로로 감안하고 있으며, 청년채움공제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 이유로는 정부지원금이 적고, 신청서류가 복잡하여 참여하는 기업이 적을 뿐 아니라,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요청시 입사를 취소 시키는 사례가 있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기업의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청년의 첫 일자리 특성 자체가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상황에서는, 한계적 기업에서 인턴 경험을 하는 것이 숙련 취득이라든지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기는 데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 보다는 부정적인 도구의 역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많은 기업들이 애초에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려는 목적보다는 저렴한 인건비로 인력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했을 수 있다. 이 경우 참여 청년들은 인턴 경험을 통해 숙련을 축적하고 취직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임금 단순노동만 제공하는 부정적 경험을 하고 나서 다음 단계의 취직에서 이러한 인턴 경험이 부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후 공제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18.04.01 개선안을 발표 하였다. 개선안에는 가입기한의 연장과 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 1회에 한해 재가입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지속할 수 있게 하였고, '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이후 청년공제 가입 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인 신규취업자로 가입조건을 제정비하였다. 금번 개선안으로 공제제도가 청년 실업률 안정 목표로한 본연의 목적에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 중소기업에 근무함으로써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갖고, 본인 납입금의 5배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로 청년 실업률 억제에 기여하고 청년에게는 실질적인 목돈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⁷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청년일자리 특성의 장기 효과와 청년고용대책에 관한 시사점'

중소기업에게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통해 정부로부터 2년동안 총 300만원의 행정지원금을 지급 받게되어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자금이 없으며, 인재육성중소기업 지정제도등으로 정부사업 참여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사업간 연계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제도이다.

향후 공제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하여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청년이 쉽게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공제 가입여부를 별개로 대상이 되는 청년이 스스로 공제 가입 여부를 결정하여 가입 신청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공제 가입 여부에 따라 가점제나 별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지환급금 제도에 대해 청년기 중소기업 업무 경험에는 경력 형성형 이직이 포함되는 점은 잘 알려진 바로, 청년공제의 해지환급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창업이나 이직에 의한 퇴직시 정부지원금을 대부분 환수하는 현재의 제도는 지나치게 해당 기업 근속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청년고용대책의 사업논리라기보다는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근속유지 지원제도로 비춰질 수 있어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본연의 목적과는 상충될 가능성이 높다. 동일 직군으로의 상향 이직, 동일 직군으로의 창업등에 대하여는 해지시 지원금을 회수 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가입 사업장에서는 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공제 제도를 악용하여 청년의 미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부기관에서는 공제 가입 청년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해야할 것이다. 현재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공제가입시기부터 유지단계, 그리고 만기공제금을 지급 받은 사후 단계까지 관계기관의 개입과 관심이 필요하며, 이는 청년 실업률의 안정과 성장을 정부와 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공제체도로 발전할 수 있는 밑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1.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 '청년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 청년 66,734명'
2.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3.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사업
4. 통계청 2017년 고용동향
5. 중소기업중앙회 '2017년 중소기업 현황'
6. 한국개발연구원 정책 연구보고서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와 청년고용대책에 대한 시사점'
7. 청년내일채움공제계약 약관
8. 강태윤기자, 아시아투데이, 「'대졸 청년 실업률 상승, 전문직,준전문직 수요부족탓」 2017.12.23
9. 송진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겨레신문, 「경험에서 우러난 '진짜' 청년 일자리 대책, 들어보실래요?」 2018.5.30
10. 국가기관통계자료 모음 「<http://neweducation2.tistory.com/1799>」
11. 조영철, 네이버블로그 「청년기 일자리 특성의 장기효과와 청년고용대책에 관한 시사점」 2018.3.15